

2025년 해외 안테나숍 신규운영주체 모집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해외 신규·유망시장의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기반 확충을 위해 2025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한국 농식품 미개척지 대상 주요 한국 농식품에 대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현지 수요에 맞는 신규품목 발굴로 수출시장 개척

2. 모집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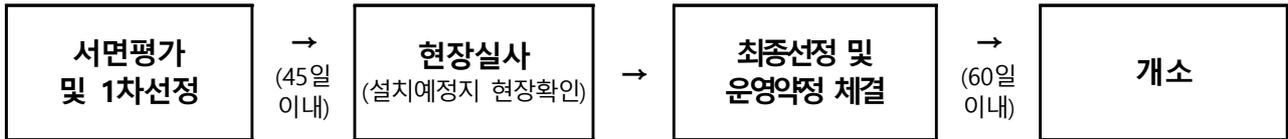
- (모집규모) 11개소 내외
- (모집시기) '25.2.14 ~ '25.2.28(2주간)
- (운영지역·도시) 인구가 밀집된 주요 도시, 안테나숍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과거 진출한 실적이 없는 지역 등 중심
- (설치제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설치코자 하는 위치로부터 10~20km* 이내 한국식품점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제한
 - 해당 국가에 대한 한국 농식품 수출규모에 따라 1억불 미만 20km, 1억불 이상 3억불 미만 10km 적용
 - 서면평가 실시 전 근방 한국식품점 운영 확인 시 평가대상 제외
- * Google map 도보 기준이며, 경로찾기 결과 복수 경로 표기 시 원거리로 적용
- ** KFZ 및 스킴인숍 유형은 출점거리 제한 적용 예외
- (모집국가) 직전 3개년('22~'24년) 평균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3억불* 미만 국가
 - 일반 안테나숍은 수출 3억불, KFZ은 10억불 미만 국가로 제한
 - * 3억불 이상(10억불 이상*) :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대만

운영국가	<p>▶ 일반 안테나숍 신청 제외 국가(6개국)</p> <p>-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대만</p> <p>▶ K-Fresh Zone 신청 제외 국가(3개국)</p> <p>- 일본, 중국, 미국</p>													
	<p>▶ 과거 안테나숍 미운영한 신규국가 또는 2,3선 도시 <과거 안테나숍 운영국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동남아시아</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앙아시아</th> <th style="text-align: center;">유럽</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남미</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타권역</th> </tr> </thead> <tbody> <tr> <td>말련(KL, 다낭, 반닛), 라오스, 인도네시아(메단, 족자카르타, 마카사르, 뽀띠아낙, 마나도), 캄보디아(프놈펜), 필리핀(다바오, 라구나, 바탕가스, 까비테), 태국(치앙마이, 방콕, 파타야), 방글라데시(다카), 인도(첸나이, 델리, 콜카타, 벵갈루루, 푸네, 구와하티, 찬디가르), 싱가포르, 대만,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반닛, 흥옌)</td> <td>러시아 (모스크바, 사할린주), 카자흐스탄 (알마티), 몽골 (울란바토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td> <td>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브로추와프), 헝가리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아일랜드 (더블린),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불가리아 (소피아), 우크라이나 (키예프), 프랑스(니스), 독일(하노버), 영국(리버풀), 이탈리아(파도바), 세르비아(노비사드), 튀르키예(이스탄불)</td> <td>멕시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궤레따로), 브라질(캄피나스, 상파울루),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페루(리마, 맛추픽추(쿠스코)),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우다드델에스테),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푼타카나, 칠레(산티아고),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엘칼라피테), 에콰도르(쿠엥카)</td> <td>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UAE(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쿠웨이트(쿠웨이트시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호주(멜버른), 캐나다(캘거리)</td> </tr> </tbody> </table> <p>▶ '25년 농식품 시장개척 전략 유망 및 개척시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유망시장(5)</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척시장(7)</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튀르키예, 폴란드, 쿠웨이트</td> <td style="text-align: center;">카자흐스탄, 멕시코, 인도, 과테말라,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남아공</td> </tr> </tbody> </table> <p>▶ 국가의 주요 관광지 등 해외 유동객이 많은 지역</p> <p>▶ 할랄 주요권역(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협력 가입국가 OIC 57개국)</p>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남미	기타권역	말련(KL, 다낭, 반닛), 라오스, 인도네시아(메단, 족자카르타, 마카사르, 뽀띠아낙, 마나도), 캄보디아(프놈펜), 필리핀(다바오, 라구나, 바탕가스, 까비테), 태국(치앙마이, 방콕, 파타야), 방글라데시(다카), 인도(첸나이, 델리, 콜카타, 벵갈루루, 푸네, 구와하티, 찬디가르), 싱가포르, 대만,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반닛, 흥옌)	러시아 (모스크바, 사할린주), 카자흐스탄 (알마티), 몽골 (울란바토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브로추와프), 헝가리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아일랜드 (더블린),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불가리아 (소피아), 우크라이나 (키예프), 프랑스(니스), 독일(하노버), 영국(리버풀), 이탈리아(파도바), 세르비아(노비사드), 튀르키예(이스탄불)	멕시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궤레따로), 브라질(캄피나스, 상파울루),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페루(리마, 맛추픽추(쿠스코)),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우다드델에스테),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푼타카나, 칠레(산티아고),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엘칼라피테), 에콰도르(쿠엥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UAE(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쿠웨이트(쿠웨이트시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호주(멜버른), 캐나다(캘거리)	유망시장(5)	개척시장(7)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튀르키예, 폴란드, 쿠웨이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남미	기타권역										
말련(KL, 다낭, 반닛), 라오스, 인도네시아(메단, 족자카르타, 마카사르, 뽀띠아낙, 마나도), 캄보디아(프놈펜), 필리핀(다바오, 라구나, 바탕가스, 까비테), 태국(치앙마이, 방콕, 파타야), 방글라데시(다카), 인도(첸나이, 델리, 콜카타, 벵갈루루, 푸네, 구와하티, 찬디가르), 싱가포르, 대만,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다낭, 반닛, 흥옌)	러시아 (모스크바, 사할린주), 카자흐스탄 (알마티), 몽골 (울란바토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브로추와프), 헝가리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아일랜드 (더블린),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불가리아 (소피아), 우크라이나 (키예프), 프랑스(니스), 독일(하노버), 영국(리버풀), 이탈리아(파도바), 세르비아(노비사드), 튀르키예(이스탄불)	멕시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궤레따로), 브라질(캄피나스, 상파울루),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페루(리마, 맛추픽추(쿠스코)),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우다드델에스테),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푼타카나, 칠레(산티아고),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엘칼라피테), 에콰도르(쿠엥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UAE(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쿠웨이트(쿠웨이트시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호주(멜버른), 캐나다(캘거리)										
유망시장(5)	개척시장(7)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튀르키예, 폴란드,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멕시코, 인도, 과테말라,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모집 우대														

- (매장유형) 총면적 30㎡ 이상*인 1)단독매장과 2)숍인숍** 매장

* 순수 판매 이외의 공간은 최소화 필요 / *숍인숍은 현지 대형유통매장, 쇼핑센터·몰의 경우 선정 우대

- (신청대상) 한국 농식품 취급 현지 벤더 및 수입업체
 - (수입업체) 해당국에 대한 전년도 한국 농식품 수입액 5만불 이상
 - (현지벤더) 해당국에 대한 전년도 한국 농식품 유통판매액 2만불 이상
- (신청제한) 선정취소, 중도포기 또는 약정 취소 경우 1년간 신규 신청 제한
- (선정절차) 사업공고, 선정평가, 현장실사, 최종선정 후 결정



- (서면평가) 최근 3개년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 신규품목 취급계획, 설치 지역의 적정성 등 평가
 - * KFZ 내 신제품 취급 시 평가 우대 부여 / 추후 별도 안내
- (현장실사) 사업자가 확보한 설치장소에 대해 한국식품점 분포, 사업계획과의 일치성, 매장임차 여부 등 적부평가 후 최종 선정
 - * 운영주체 선정 평가는 별도 평가위원(aT 및 유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하여 실시하되,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3. 안테나숍 운영형태

농식품 안테나숍		K-Fresh Zone	
일반 농식품 홍보 판매플랫폼		신선농산물 전문 판매플랫폼	
			
숍인숍	로드숍	숍인숍	

- (안테나숍) 주요 한국 농식품 전반 취급해야하며, 수산물 및 자사 OEM 제품 비중은 각 20% 이하로 구성
- (K-Fresh Zone) 한국 신선 농산물 전문 매장이며 과일류, 채소류 등 우리 농산물 20~30개 등 신선 품목 위주 구성
 - * 연중 KFZ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공식품 취급 일부 허용하나(20% 이하), 가공식품의 경우 전체 판매실적 중 20%까지 판매의무액으로 인정하며 초과 시 의무액 산정 제외

4. 지원사항 : 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 비용의 70~80%(KFZ 80~90%)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 권역별 기본 지원한도

- 매년말 연간 운영실적에 대한 종합운영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권 역	약정기간	운영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안테나숍 (일반/KFZ)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40	100
		9개월 이상	250	180	110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3개월 이상	100	-	-
		6개월 이상	130	90	70
		9개월 이상	160	110	80

* 1년차 신규 안테나숍의 최소 사업기간은 3개월 이상 운영, 2년차 이상은 6개월 이상 운영 필요

** 중동 지원한도 변동사항은 '25년 연속운영주체부터 적용

○ 매장수에 따른 추가지원(KFZ에 한함)

매장 수	3개 매장 미만	3개 이상 5개 미만	5개 이상
지원한도	기본 지원한도	기본 지원한도 × 1.1배	기본 지원한도 × 1.2배

* 단, 추가매장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매장 수에 포함

* 기 오픈 운영주체는 약정체결시점부터 지원 / 신규 운영주체는 임차 및 장치비의 경우 '최종 선정일'부터 그 외 증빙은 '숍 오픈일(약정 체결일)' 부터 인정

5. 사업의무 : 공사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외부공개 포함),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 사업 의무사항 및 패널티(안테나숍·KFZ)

○ 의무 항목 : 수입·판매액, 마켓테스트

- (수입·판매유통액) 당해연도 약정액 대비 연차별 의무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수입의무액	약정액	1.2배	1.4배 이상	1.6배 이상
판매(유통) 의무액		없음	1.2배 이상	1.5배 이상

사업의무액 (수입액, 판매액)	달성비율	80%미만	80~90%미만	90~100%미만
	차감비율	15%	10%	5%

* 수입바이어는 수입의무액과 판매의무액 각각 부과하며, 현지 구매상품을 조달하는 벤더 등의 경우 수입의무액 제외

** 1년차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 연락처를 위하여 수입 의무액만 부여. 단, 수입의무액이 없는 벤더 등의 사업자의 경우 판매(유통)의무액 1배 적용

- (마켓테스트) 약정기간 내 월 1회(회당 20명이상) 이상 실시하며 단, 기존 품목이 아닌 신규품목*으로 추진

* 신규품목이란 바이어가 기존에 미취급하였거나 미래클 품목군, BKF를 통한 신규 수입 제품 등으로 신규로 수입하여 런칭한 제품 또는 마켓테스트를 통해 런칭 예정인 제품

마켓테스트 추진횟수	달성비율	3회 이상 미충족	2회 미충족	1회 미충족
	차감비율	10%p	5%p	3%p

* 최종 지원비율 산출 예시 : ① 일반 안테나숍 2년차(최종평가 중위) ② 수입의무 달성 80% 미만 ③ 사업기간 90% 달성 ④ 마켓테스트 2회 미달성 ⇒ (예) 최종정산비율 : 기본 지원 비율 75% - 15%p - 5%p - 5%p = 50%

- (약정기간 달성) 약정기간 대비 실제 매장 운영기간 달성 여부

약정기간 (개월수 기준)	달성비율	50%미만	50~70% 미만	70~90%미만	90~100%미만
	차감비율	30%p	20%p	10%p	5%p

* 약정기간 : 안테나숍 선정 이후, 약정체결 시 기재한 매장 운영일

* 운영기간 : 결과보고 상 실제 개소일로부터 마감일 개소 당월은 운영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인정

6.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운영주체 모집	1차 선정 (3월)	최종선정 및 약정체결 (~5월)	안테나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주체 모집 공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주체 선정 심사 (계량, 비계량 평가/ 선정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선정 및 현지실사 최종선정 운영주체 업무약정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 및 운영 운영종료 후 정산 사후관리(성과)

□ 신청접수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접수

○ aT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가능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및 연락처 >

해외조직망		관 할 지 역	연락처
중국 지역 본부	다 련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몽골	▪ E-Mail : dalianat@at.or.kr
	홍 콩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광둥성	▪ E-Mail : hkatcenter@at.or.kr
아세안 지역 본부	하 노 이	아세안지역본부, 베트남 북부, 라오스	▪ E-Mail : hanoi@at.or.kr
	호치민	베트남 남부, 캄보디아, 필리핀	▪ E-Mail : atcenterhcmc@gmail.com
	방 쿽	태국, 미얀마, 인도	▪ E-Mail : bangkok@at.or.kr
	자카르타	싱가포르, 말련, 인니, 호주, 뉴질랜드	▪ E-Mail : jakarta@at.or.kr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 E-Mail : atcenterkl@at.or.kr
미주본부	LA	미국 서부.산악 및 중미	▪ E-Mail : losangeles@at.or.kr
	뉴욕	미국 동부.중부 및 캐나다	▪ E-Mail : newyork@at.or.kr
	상파울루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 E-Mail : saopaulo@at.or.kr
프랑크푸르트		서유럽(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북유럽(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동유럽, 이스라엘	▪ E-Mail : atgermany@at.or.kr
파 리		서유럽(프랑스, 모나코,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남유럽	▪ E-Mail : paris@at.or.kr
두 바 이		중동 , 아프리카	▪ E-Mail : dubai@at.or.kr
모스크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E-Mail : atmoscow@at.or.kr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HWP, PDF 파일)
2.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각 1부(JPG, PDF 파일)
 -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서류 제출
3. '24년 수출입실적(수출입면장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JPG, PDF 파일)
 - * 기 제출업체는 제출 불요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4일 ~ 2월 28일(금) 18시까지

* 해외지사는 소재지 시각 적용

○ 문의처 : 관할 지사

2025.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